

의안번호	2220074
의 퇴 인	서영교의원
회 답 일	2026.09.03.
추계번호	26C364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의2 신설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의 설치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둔다(제1항).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환류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및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3조의2 신설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전담기구가 설치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 운영비 등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전담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조직 규모 및 담당 업무 등이 불확정적이고, 현재 중앙 및 시·도교육활동보호센터 등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존재하여 이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참고로, 현재 교육활동 보호 업무는 교육부 및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총괄하에, 시·도교육청 및 시·도교육활동보호센터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